



선진국 연금세제 지원금의 환류 사례와 소득보장효과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 및 장수화 정도를 고려하면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후소득 제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연금세제 지원금(소득공제분 및 세액공제분)을 개인의 연금재원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환류세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적립금을 제고하는 환류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은 연금사업자가 20%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tax relief)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개인계좌(pension pot)에 불입함
 - 뉴질랜드의 Kiwi Saver에서도 연금사업자가 매년 1월 1일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세금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불입함
- 환류세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고 적립금 제고를 통해 연금 수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보험료 인상보다 환류세 적용을 통해 연금재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 보험료에 환류세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1%, 최대 납부액을 가정 시 3.07%(20년 가입, 20년 수급)이고,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류세가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사적연금 적립금을 제고를 위해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환류세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 방식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문제는 없으나 환류소득에 대한 (준)강제화를 조건으로 하므로 선택에 의한 탈퇴(Opt-out)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2018년 9월 국민연금 재정추계결과가 공표된 이후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만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정에 비해 3년 앞당겨짐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
- 고령화 및 장수화 정도를 고려하면 은퇴 후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이 현재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후소득 제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기대여명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보다 더 강화된 노후준비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의 심화는 과거와 같은 노후준비 방법의 한계를 방증한다는 점에서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 조화되는 노후준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고는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 검토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¹⁾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연금세제혜택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노후자산 형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동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추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사적연금 환류세(가칭) 적용 사례와 시사점



가. 영국 및 뉴질랜드의 환류세²⁾ 적용 사례 및 특징

- 1) 세제지원에 따른 환급금 발생은 공적연금에서도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함
- 2) 본 고의 환류세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제혜택이 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제를 의미함

■ 영국과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퇴직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적립금을 제고하는 환류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자동세액환급(automatic tax relief)을 신청하면 연금사업자(pension provider)가 20%세율로 적용되는 세액환급액(tax relief)을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개인계좌(pension pot)에 불입해 줌³⁾
 - 보험료는 소득공제되며 개인이 기여금(세후 기준)을 납입하면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기본률 20%)하여 세금을 환급 받고 이를 개인계좌에 불입해 주는 방식임
 - 한계세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본인이 별도로 추가신고 하여야 함
- 뉴질랜드의 Kiwi Saver⁴⁾에서도 연금사업자(KiwiSaver provider)가 매년 1월 1일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세금환급(tax credit)을 신청하고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불입함⁵⁾
 - 뉴질랜드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⁶⁾: NZS)의 수급시작 시점인 65까지 적용되며, 최소 5년간은 유지해야 함
 - 2011년 6월까지 1,042.86뉴질랜드달러를 100% 환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50%(521.43뉴질랜드달러) 환급됨

■ 연금 환류세제는 동 제도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보조금 및 세제지원) 없이, 이미 연금 세제정책을 통해 지원된 금액을 연금재정에 다시 환류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연금 환류세제는 납부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금액을 강제 혹은 준강제(Opt-out) 방식으로 연금재정(노후재원)으로 환류한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세제혜택과는 다름
- 또한 일정 수준의 납부금을 납부단계에서 면제 혹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과도 차이가 있음

■ (세제혜택) 일반적으로 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금재정으로 환류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환급금 형태로 현재 소비에 충당됨으로써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사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은 공사적연금이 다르나(공적연금은 소득공제,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방식), 공제 후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은 동일함
- 주요국들의 공사적연금 세제지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사적연금 모두 소득공제방식을 적용받고 있으나, 환류세제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공제 후 연금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은 동일함

3) <https://www.gov.uk/tax-on-your-private-pension/pension-tax-relief>

4) 2007년에 자발적 퇴직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 도입

5) <http://www.kiwisaver.govt.nz/new/benefits/mtc/>

6)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정액급여)

■ (보조금) 사적연금 납부액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례는 호주, 영국, 독일 등 다양한데 납부보험료에 대한 면제 혹은 직접적 지원 형태로 환류세와 차이가 있음⁷⁾

- 호주는 비적격 퇴직연금제도(Non-Concessional (after-tax)Contributions)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super co-contribution)⁸⁾
 - 소득수준(51,021호주달러⁹⁾)이나 연령(71세 이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납입한 보험료 1호주달러 당 정부가 0.5호주달러(연간 최대 500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함¹⁰⁾
- 영국의 NEST퇴직연금의 보험료는 총 8%로 사용자 3%, 근로자 4%, 정부 1%로 구성됨¹¹⁾
 - 정부 보조금 1%는 보험료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여서 가입자의 세제혜택으로 받은 금액의 환류형태인 환류세와 차이가 있음
- 개인연금에 대한 대표적 세제지원은 독일의 리스트연금을 들 수 있으나 국가에서 보험료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이미 자신의 소득원이 된 세제지원금에 대해 적용하는 환류세제와 차이가 있음

〈표 1〉 연금의 세제지원(보조금 포함)과 환류세 비교

| 구분 | 세제지원(보조금 포함) | 환류세 |
|-----|---|--|
| 공통점 | -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있음을 조건으로 함 | |
| 차이점 | - 지원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은 연금계좌로 환류되지 않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은퇴전에 생활비로 충당되어 노후소득원이 되지 못함 - 대부분의 연금세제에 적용: 호주 Super Co-Contribution, 영국 NEST, 독일 리스트 연금, 아이헬 보조금, ¹⁾ 우리나라 연금저축 등 | - 지원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이 연금계좌로 강제 혹은 준강제(Opt-out) 형태로 적립됨 - 즉, 지급받은 세제혜택 금액을 노후재원으로 재할용하는 방법임 - 영국 Automatic Tax Relief, 뉴질랜드 Kiwi Saver에 적용되는 tax credit |

주: 1) 아이헬보조금은 적립방식 퇴직연금에 적용되며, 2001년 독일의 공적연금 연금급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적연금 역할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됨

자료: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참고하여 재정리

나. 환류세제의 의의

■ 환류세제는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이 없고 적립금 제고를 통해 연금 수령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7) 공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OECD 주요국의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적연금의 보조금을 중심으로 정리함

8)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9) 1호주달러=809.62원 (2018.10.29. 기준)

10)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11) 소득공제방식으로 지원(김원식·김재현·김우철·김상봉(2015),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p. 24)

-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 연금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종신연금 및 Drawdown¹²⁾ 등 연금화 수령 비율이 높고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Small pension Pot¹³⁾ 혹은 UFPLS¹⁴⁾ 등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적립금 제고가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¹⁵⁾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령 현황에서도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2>에 의하면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약 24만 좌)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9%이지만 이들의 적립금액은 건당 2억 3천만 원이어서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인 1,649만 원보다 훨씬 높음

<표 2>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2017년 말)

| 구분 | 연금수령 | | 일시금수령 | | 합 계 | |
|--------------------|--------|--------|---------|--------|---------|---------|
| | 계좌 수 | 적립금액 | 계좌 수 | 적립금액 | 계좌 수 | 적립금액 |
| 계좌수(개) 및 적립금액(억 원) | 4,672 | 10,756 | 236,783 | 39,039 | 241,455 | 49,795 |
| 비중(%) | (1.9) | (21.6) | (98.1) | (78.4) | (100.0) | (100.0) |
| 계좌당(만 원) | 23,022 | | 1,649 | | 2,062 | |

주: 일시금수령·연금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 안내,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 보험료 인상보다 환류세 적용을 통해 연금재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 방식은 납부할 보험료가 별도의 소득 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증액이 보다 용이한 점이 있음

3. 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효과



가.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규모 및 금액

- 사적연금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은 대상자는 연간 239만 명¹⁶⁾이며, 이들의 연간 보험료 세액공제액(세제혜택)은

12) 축적된 자산을 거치기간동안 자유롭게 운용 및 인출이 가능하고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 (2011년 도입, 인출형연금).
 13) 60세 이상의 은퇴자는 2,000 파운드 미만의 소액연금 총액을 한 번에 인출 가능(소액인출형연금)
 14) 2015년 연금자유화 이후 제한없이 적립금 인출이 가능하며, 25% 비과세 75%는 종합과세(무제한인출형연금)
 15) 정원석(2017), 「영국의 퇴직연금 세제 변화에 따른 적립금 수령행태와 시사점」, KiRi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16) 납세자와 면세자로 구분하면 각각 219만 명, 20만 명으로 조사됨

1인 평균 35만 원(총 8천 460억 원¹⁷⁾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 소득수준별로는 8천만 원 초과 소득구간에서 44만 원의 세액공제로 가장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수준이 높음
- 사적연금의 연간 평균 납부액(연 35만 원)은 퇴직연금(본인부담) 265만 원, 연금저축 258만 원이며 여기에 세액공제를 13.2~16.5%를 적용하여 산출됨
 -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연간 700만 원(IRP와 연금저축 합산)이므로 환류세 적용 시 최대 연간 116만 원(700만 원×16.5%)을 추가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3〉 사적연금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 및 공제규모(2016년 기준)

| 소득 구분 | 대상자 수(천 명): A | 총 공제액(10억 원): B | 1인 평균 공제액(천 원):B/A |
|----------|---------------|-----------------|--------------------|
| 2천만 원 이하 | 27 | 1.4 | 53 |
| 2~3천만 원 | 124 | 17 | 140 |
| 3~5천만 원 | 464 | 141 | 304 |
| 5~8천만 원 | 953 | 326 | 342 |
| 8천만 원 초과 | 821 | 361 | 439 |
| 소계 | 2,390 | 846 | 354 |

주: 1) 사적연금은 퇴직연금(본인부담분)과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산출

2) 납세자 및 면세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나. 환류세 적용 시 노후소득 개선 효과

■ 환류세 적용 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함

- 적용대상자는 사적연금 가입자로 하고, 세제혜택은 현행 방식인 13.2%~16.5% 세액공제율을 납부액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사적연금 급여산식은 수지상등을 전제로 하는 수익비 1(보험료현가=급여현가)을 적용함
- 경제변수인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은 산출의 편의상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가입기간은 각각 20년, 30년, 40년인 경우로 하되, 수급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함
- 연금의 소득보장효과는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로 판단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은퇴 후 연금급여 액현가(세제혜택 금액)/은퇴 전 연간총급여액 현가'로 산출함

17) 납세여부로 구분하면 납세자는 37만 원, 면세자는 19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분석가정

| 구분 | 내용 |
|------------|--|
| 분석자료 |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
| 적용대상자 | 사적연금 가입자 |
| 세제혜택 수준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16.5%, 5천만 원 이상은 13.2% 적용 |
| 연금 급여산출 방식 | 수지상등원칙 적용(수익비=1, 보험료현가=급여현가) |
| 경제변수 | 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모두 동일 |
| 가입기간 | 20년, 30년, 40년 |
| 수급기간 | 20년 |
| 소득대체율 | 은퇴 후 연간 연금급여액현가(연간 세제혜택 현가)/은퇴 전 연간총급여액 현가 |

■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적립금으로 환류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의 경우 1%, 최대 납부액을 가정할 경우 3.07%로 추정됨

-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인당 평균 연간 총급여액 3,383만 원에서 매년 1인 평균 공제액인 35만 4천원 만큼 20년동안 납부하고 20년 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1.0%로 추정됨
 - 이를 최대 납부가능 금액인 7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평균 3.07%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5〉 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 시 소득대체율 추정(20년 가입 & 20년 수급)

(단위: 천원, 천명, %)

| 소득 구분 | 1인당 총급여액(A) | 공제자수 | 1인 평균 공제액(B) | 소득대체율 | |
|----------|-------------|-------|--------------|---------|----------------------------|
| | | | | 평균(B/A) | 최대 ¹⁾ (최대납부액/A) |
| 2천만 원 이하 | 10,539 | 27 | 53 | 0.5 | 10.96 |
| 2~3천만 원 | 24,826 | 124 | 140 | 0.6 | 4.65 |
| 3~5천만 원 | 39,074 | 464 | 304 | 0.8 | 2.96 |
| 5~8천만 원 | 63,460 | 953 | 342 | 0.5 | 1.46 |
| 8천만 원 초과 | 120,593 | 821 | 439 | 0.4 | 0.77 |
| 소계 | 33,827 | 2,390 | 354 | 1.0 | 3.07 |

주: 1) 최대는 모든 소득계층에 연간 700만 원의 사적연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이하동일)

2) 20년 가입기간, 20년 수급기간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환류세 적용에 따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가입기간을 30년(40년)으로 할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은 1.57%(2.09%)로 증가함
 - 최대 납부가능 금액인 700만 원을 납부할 가정할 경우 30년(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61%(6.15%)가 될 것으로 추정됨

〈표 6〉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공사적연금 보험료의 환류세 적용 시 소득대체율 추정

(단위: %)

| 소득 구분 | 30년 가입 & 20년 수급 | | 40년 가입 & 20년 수급 | |
|----------|-----------------|-------|-----------------|-------|
| | 평균 | 최대 | 평균 | 최대 |
| 2천만 원 이하 | 0.75 | 16.44 | 1.00 | 21.92 |
| 2~3천만 원 | 0.85 | 6.98 | 1.13 | 9.30 |
| 3~5천만 원 | 1.17 | 4.43 | 1.55 | 5.91 |
| 5~8천만 원 | 0.81 | 2.18 | 1.08 | 2.91 |
| 8천만 원 초과 | 0.55 | 1.15 | 0.73 | 1.53 |
| 소계 | 1.57 | 4.61 | 2.09 | 6.15 |

주: 30년 혹은 40년 가입기간, 20년 수급기간

자료: 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를 기준으로 재정리함

4. 시사점



- 환류세 방식은 연금재원에 의해 발생한 환류소득을 연금소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동 분석 가정에 의해 추정된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자 1%, 최대 납부액을 가정 시 3.07%(20년 가입, 20년 수급)이고,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류세가 노후소득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추가적 확대가 어렵고, 사적연금은 정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환류세 방식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문제는 없으나 환류소득에 대한 (준)강제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류세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연금세제 지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재정지원은 없으므로 현재 소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미래 소비(저축)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 논의는 필요할 것임
 - 한편, 환류세 도입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입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의해 탈퇴(Opt-out)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종합하면 사적연금 적립금을 제고를 위해 세금 환급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환류세제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